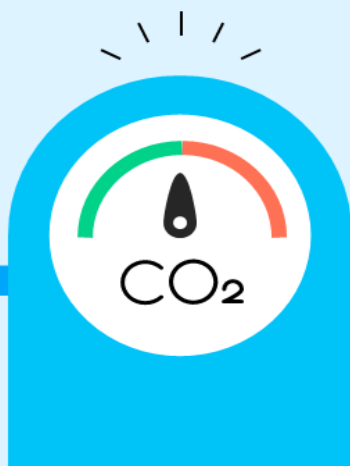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설명자료

2024. 10





CONTENTS

광역시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 및 주요 FAQ

I

탄소중립기본법

II

추진배경 및 경과

III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IV

주요 FAQ 및 기타



제11조 (시·도 계획의 수립 등)

-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2조제1항에 따른 2050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시·군·구계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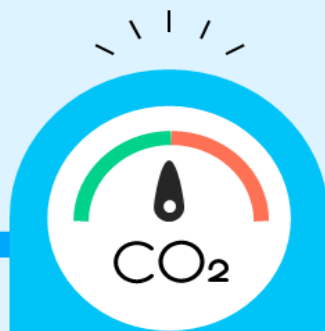
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중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추진배경 및 경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

국가의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탄소중립 이행체계와 주체별 의무 제시
(시도, 시군구)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법적 의무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2.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의 주도적 탄소중립 요구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소도시 등 도시 인프라의 체질 개선, 다양한 환경기술 적용, 지자체-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모델 구현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정부주도 탄소중립 정책 → 정부+지역/민간주도 등 사회 전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거버넌스 체계 제시

기존에는(AS-IS)

정부 주도



앞으로(TO-BE)

정부+지역·민간 주도

■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4)

기존에는(AS-IS)

전문가 주도
이행기반 부족
형식적 거버넌스



앞으로(TO-BE)

시민주도
지역 이행기반 강화
실효적 협력 거버넌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 **시·도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

시·군·구 기본계획은 시·도 계획을 최초 수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

* 국가 기본계획('23.4) → **시·도 계획 수립(~'24.4)** → **시·군·구 계획 수립(~'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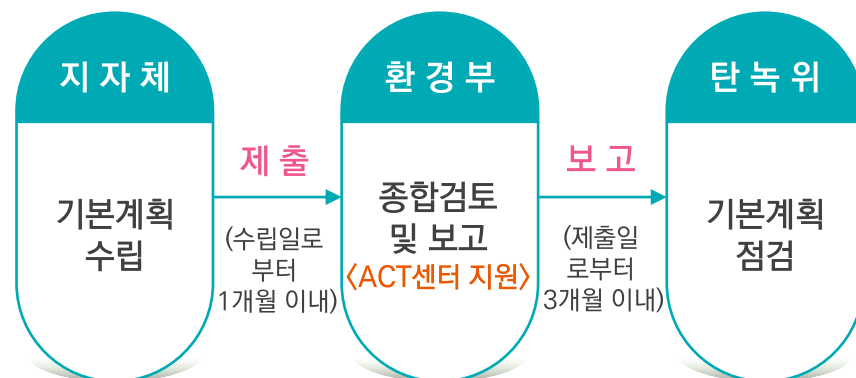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지자체탄소중립ACT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2항1호에 따라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법적의무
이행 지원

지자체 기본계획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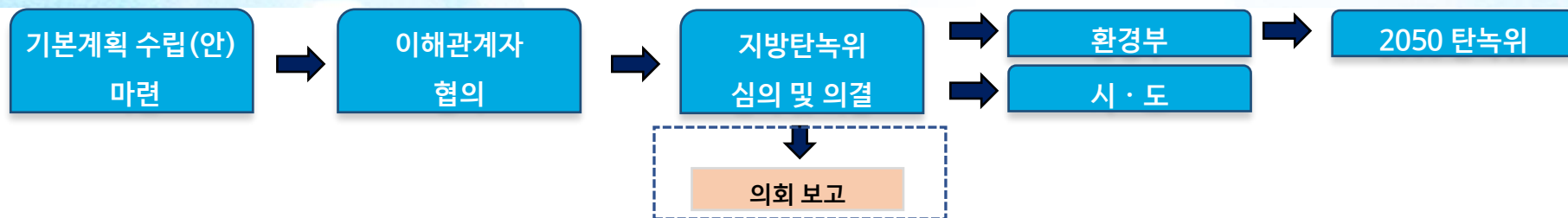
☑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부 종합 검토,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보고

* 시·도 기본계획 수립(~'24.4) → 기본계획 환경부
제출(수립 후 1개월 내) → 탄녹위 보고(전 시·도 계획
수립 완료 이후 3개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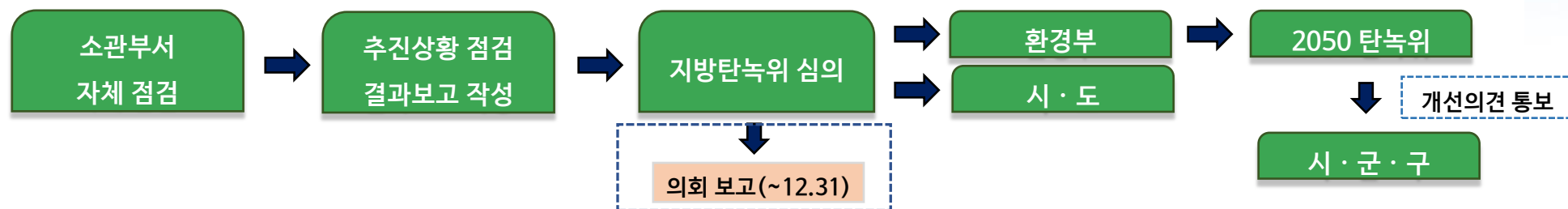
*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25.4) → 기본계획 환경부
제출(수립 후 1개월 내) → 탄녹위 보고(전 시·군·구 계획
수립 완료 이후 3개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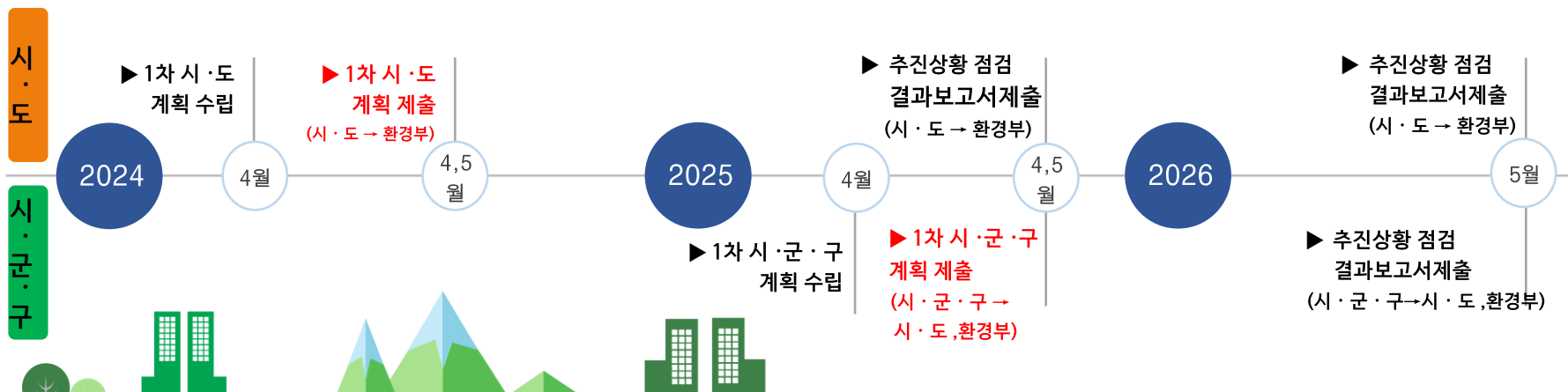
❖ 시·군·구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군·구 계획 추진상황점검



❖ 주요 일정



“ 그간 추진경과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관계부처 합동)

23.4월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 (환경부)

23.5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컨설팅
(공단 → 17개 시·도, 20개 시·군·구)

23.7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제출 완료
(17 시·도 → 환경부)

24.4월

17개 시·도 기본계획 종합 보고 완료
(환경부 → 2050 탄녹위)

24.7월

시·군·구 컨설팅(147개 지자체)
및 가이드라인 개정(환경부)

24.9월



III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주요 항목 및 세부작성내용 ”

주요 항목	세부 작성 내용
1 계획기간 설정	(광역지자체) '24 ~ '33 , (기초지자체) '25 ~ '34
2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완항목 및 목차(안) 제시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적응대책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5 지역별 국제협력, 6 지자체 간 협력, 7 교육·홍보 8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가장 최근에 공표된 GIR 통계자료 활용 (자체산정의 경우 병기 가능)
4 감축목표설정 범위 (관리권한 인벤토리)	1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에 대한 목표 수립 여부 2 전환, 산업 부문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 가능한 감축사업의 감축목표량만 작성 3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구성
5 비전 및 전략수립 방안제시	· 지역의 비전은 1 현황 분석 결과, 2 기존계획의 평가, 3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제시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 국가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과 연계성 확보
6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	기준연도(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기준, 목표연도(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기준
7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작성방안 제시	1 적응대책, 2 공유재산 관리, 3 국제협력 및 지자체 간 협력, 4 교육 및 소통 5 녹색성장촉진, 6 청정에너지 전환촉진, 7 정의로운 전환, 8 탄소중립 녹색성장 인력양성



“ 감축목표 설정 범위 ”

국가기본계획('23.5)			(단위: 백만톤CO2eq,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	2030 목표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 환	269.6	149.9 (44.4%)	145.9 (45.9%) ¹⁾
	산 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 물	52.1	35.0 (32.8%)	35.0 (32.8%)
	수 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 소	(-)	7.6	8.4 ²⁾
	탈루 등	5.6	3.9	3.9
	흡수원	(-41.3)	-26.7	-26.7
· 제거	CCUS	(-)	-10.3	-11.2 ³⁾
	국제감축	(-)	-33.5	-37.5 ⁴⁾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직접	건물	가정
		상업/공공
	수송	
	농업	
간접	흡수원	
	전력	수송(도로)
		건물(상업/공공)
		건물(가정)
	열	건물(상업/공공)
		건물(가정)
	폐기물	

(‘18년 기준) 전체 배출량 중 전환, 산업 부문의 비중 약 73%(국가 관리권한)
그 외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약 27%

관리권한 배출량 중 간접배출이 차지하는 비율:
45.4%(17개 광역시 평균)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구성

- “지자체 관리 권한 인벤토리”는 지자체 관리 권한 유무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비관리 대상(공공 전기 및 열 생산,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등 산업, 전환 부문)과 중복산정 카테고리(직접배출 中 폐기물)를 제외하여 구성함
- 지자체 관리 권한인벤토리의 구성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음

구분	설명
에너지(VKT기준)	
A. 연료연소(VKT기준)	
1. 에너지 산업	비관리
2. 제조업 및 건설업	비관리
3. 수송(VKT기준)	
a. 항공	비관리
b. 도로	관리 권한
c. 철도	비관리
d. 해운	비관리
e. 기타수송	비관리
4. 기타	
a. 상업/공공	관리 권한
b. 가정	관리 권한
c. 농업/임업/어업	비관리
5. 미분류	비관리

구분	부문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
직접배출량	건물	가정 에너지-A.연료연소-4.기타-b.가정
		상업/공공 에너지-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수송	에너지-A.연료연소-3.수송-b.도로수송
	농업	농업-A.장내발효 농업-B.가축분뇨처리 농업-C.벼재배 농업-D.농경지토양-a.직접배출, b.간접배출* 농업-G.석회사용 농업-H.요소사용
	흡수원	LULUCF 전체
간접배출량	전력	전력-A.연료연소-3.수송-b.도로 전력-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전력-A.연료연소-4.기타-b.가정
	열	열-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열-A.연료연소-4.기타-b.가정
	폐기물	폐기물 전체 발생량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1. 에너지 - A.연료연소]



“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제시 방법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GIR)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배출현황 및 특성을 제시하며, 배출·흡수 현황은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각각 제시하며 합산량을 표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중복(전력, 열, 폐기물)

※ 구성방법 ☞ 직접배출량의 에너지 부문에서 ‘1A1a 공공전기 및 열 생산’ 및 폐기물처리 부문(전체) 배출량을 제외하고 간접배출량의 전체 부문을 합산

직접배출량					
단위 : Gg CO2eq.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배출량(VKT기준)	27,945.70	27,202.02	25,954.75	25,368.15	24,882.46
순배출량(VKT기준)	27,794.93	27,072.54	25,882.50	25,293.94	24,800.08
에너지(VKT기준)	27,082.86	26,380.64	25,149.58	24,784.52	24,343.65
A. 연료연소(VKT기준)	26,959.40	26,252.68	25,017.61	24,659.14	24,220.66
1. 에너지산업	850.13	817.49	549.24	971.04	2,077.69
a. 공공 전기 및 열 생산	659.12	576.37	534.53	957.74	2,065.68
b. 석유정제	-	-	-	-	-
c. 고체연료 제조 및 기타 에너지 산업	191.01	241.11	14.72	13.31	12.01
2. 제조업 및 건설업	808.45	673.13	391.69	409.67	390.28
a. 철강	0.58	0.52	0.45	0.44	0.28
b. 비철금속	14.57	22.67	6.80	6.41	6.36

직접배출량					
단위 : Gg CO2eq.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배출량(VKT기준)	27,945.70	27,202.02	25,954.75	25,368.15	24,882.46
순배출량(VKT기준)	27,794.93	27,072.54	25,882.50	25,293.94	24,800.08
에너지(VKT기준)	27,082.86	26,380.64	25,149.58	24,784.52	24,343.65
산업공정 및 제품 생산	550.86	457.93	488.17	411.66	350.85
농업	3.36	3.09	2.07	1.97	1.85
LULUCF	- 150.77	- 129.48	- 72.26	- 74.20	- 82.38
폐기물	308.61	360.36	314.93	169.99	186.11
A. 폐기물매립	- 61.86	- 45.38	- 40.72	- 47.51	- 31.05



감축률 산정 예시

예시

(단위: 톤CO₂eq)

구 분		2018년 배출량(A)	2030년		
			감축량 (B)	목표배출량 (C) [C=A-B]	감축률 (1-C/A) * 100)
합 계		100	15	85	15%
관리권한	건물	25	3	22	
	수송	25	4	21	
	농축산	25	4	21	
	폐기물	25	4	21	
	흡수원	-	-	-	
관리권한 외	전환	(30)	15		
	산업	(20)	10		

〈예시〉 비전 및 전략

비전

삶의 가치를 높이는 탄소중립, 청정기후 행복 00시

목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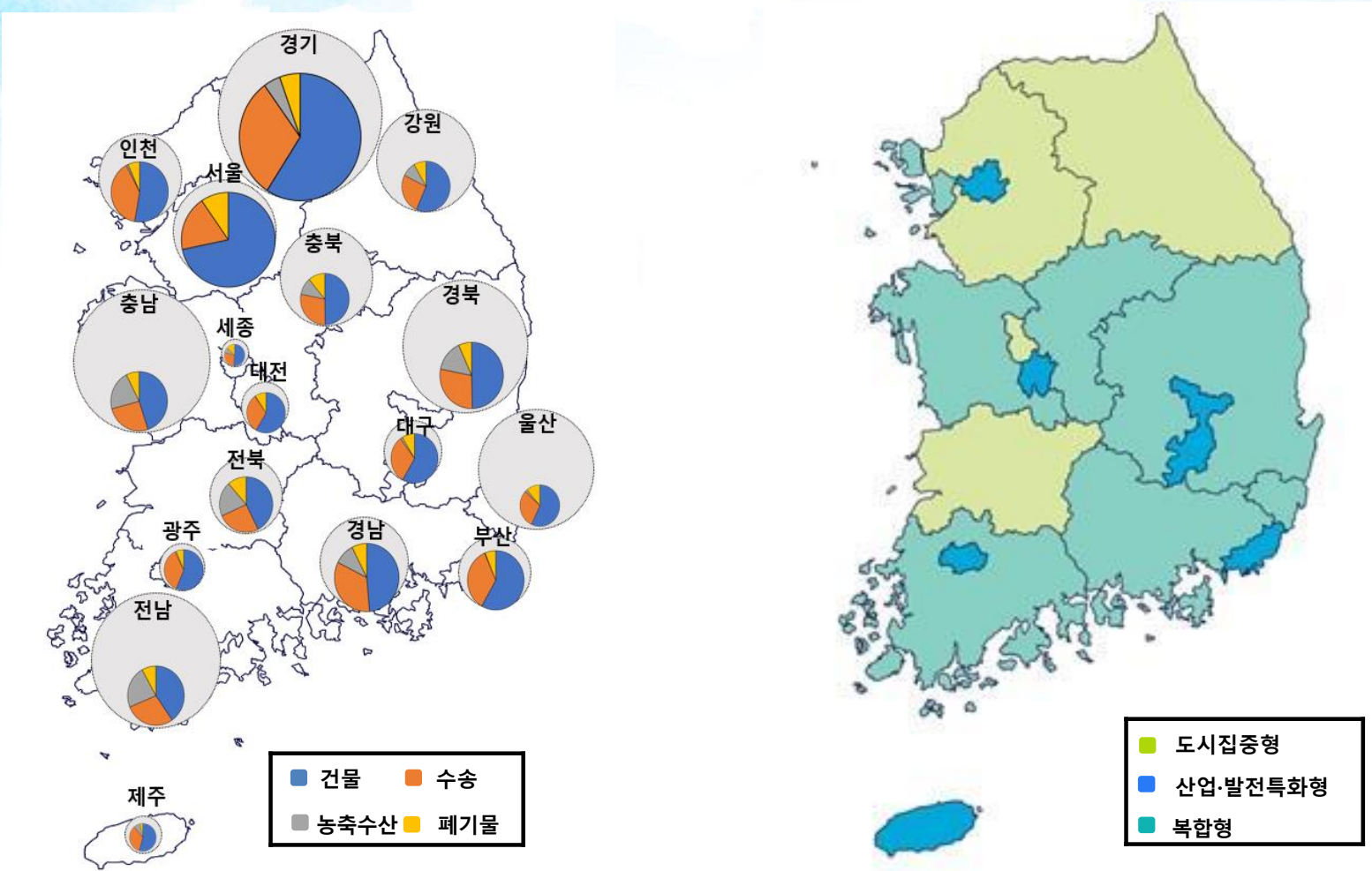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15% 감축 + 추가감축량 25tCO₂eq)전환, 산업을 포함하여 감축을
제시할 경우(40%)
관리권한 기준 감축율(15%) 필수병기

추진전략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산업 구조
대전환(청정 전환)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체계 구축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17개 시·도 배출 현황 분석 ”



☑ 큰 원은 지역별 총 배출량, 작은 원은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 17개 시·도 중장기 감축목표 ”

17개 광역의 2030
온실가스 총괄
감축목표 **42.7**
%

국가 감축목표('18년대비 '30년 40%) 고려,
'18년대비 '30년 38~53% 감축목표 제시

일부 시도 관리권한 외(전환, 산업)
추가감축(8.8백만톤) 제시

시도별 2030 감축목표

도시집중형 산업·발전특화형 복합형

서울특별시 38%

인천광역시 41%

세종특별자치시 40%

충청남도 43%

대전광역시 40%

전북특별자치도 43%

광주광역시 45%

전리남도 40%

40% 경기도

97% 강원특별자치도

40% 충청북도

43% 경상북도

45% 대구광역시

40% 울산광역시

45% 부산광역시

40% 경상남도

53%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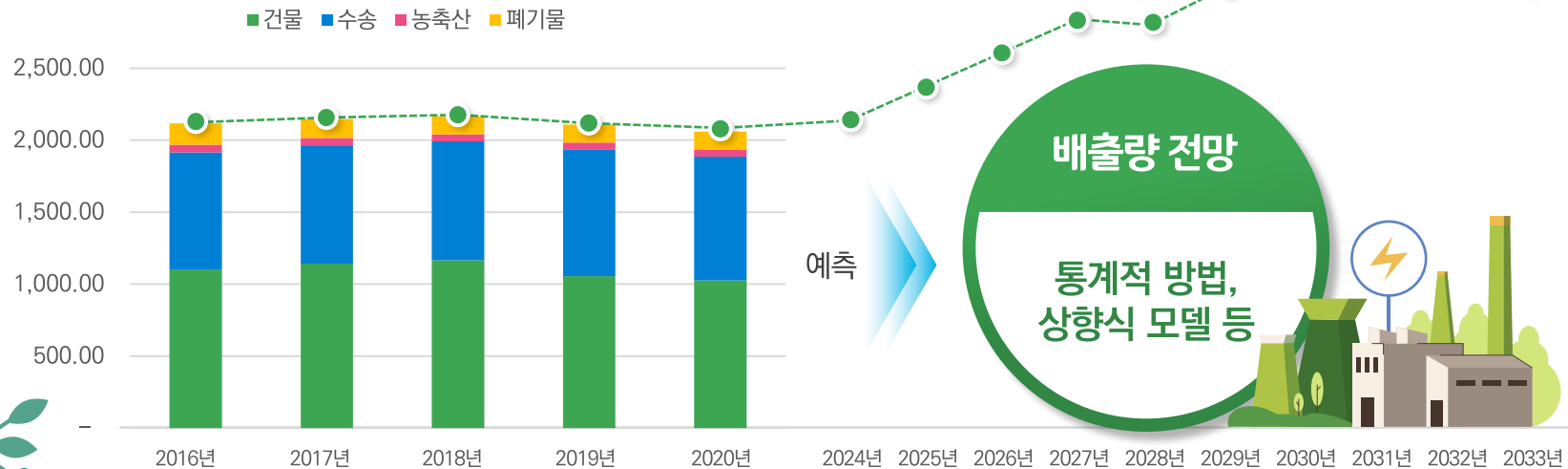
“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

관리권한 인벤토리 기준 배출전망 실시

배출량전망방법

- ☑ 배출량 전망방법은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활용하는 배출량 통계는 관리권한 인벤토리(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발생량 기준)로 사용하여야 함.

온실가스 배출량(천t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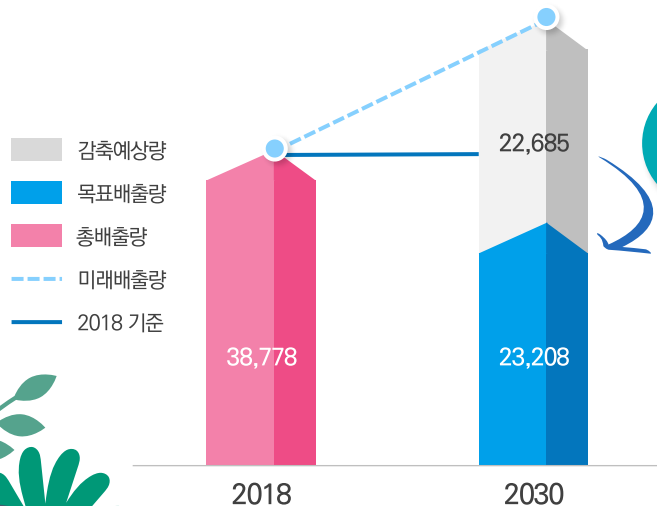


“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

감축목표 설정방법

- ☑ 배출전망을 통해 제시된 해당 연도의 미래 배출량에서 감축사업으로 인한 해당 연도의 감축량을 제외하고 제시하여야 함.

2030년 목표 배출량 =
2030년 미래 전망 배출량 - 감축사업으로 인한 2030년 예상감축량



구분	부문		2018년	2030년	2033년
			기준 배출량	목표 배출량	목표 배출량
관리권한 배출량(흡수원 제외)			7,569.29		
관리권한 배출량(흡수원 포함)			7,502.45		
직접+간접 배출량	건물	가정	2,019.63		
		상업	2,237.34		
		공공			
	수송		2,748.81		
	농축산		82.44		
	폐기물		481.07		
	흡수 및 제거	흡수원	-66.84		

“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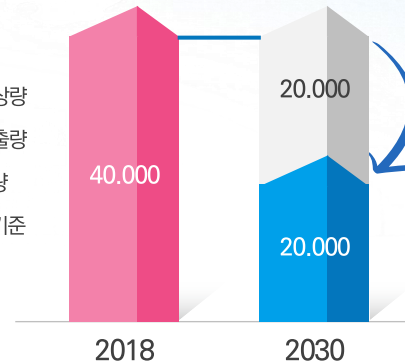


국가 기본계획(예시)

단위: 백만톤 CO₂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	2030 목표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 감축예상량
 ■ 목표배출량
 ■ 총배출량
 — 20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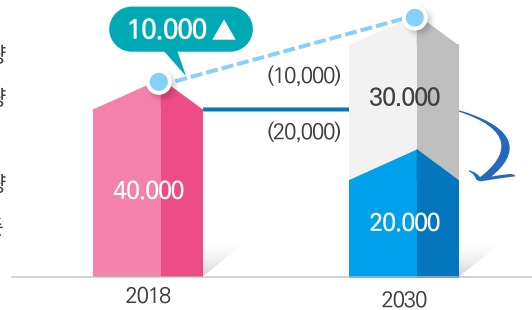


☑ 감축량 : 20,000

☑ 감축률 : 50% ()

지자체 기본계획(예시, 전망치 증가)

■ 감축예상량
 ■ 목표배출량
 ■ 총배출량
 - - - 미래배출량
 — 20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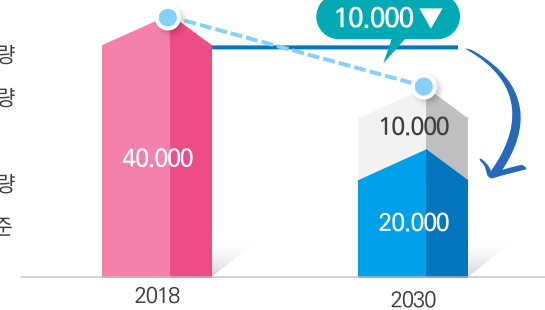


☑ 감축량 : 30,000

☑ 감축률 : 50% ()

지자체 기본계획(예시, 전망치 감소)

■ 감축예상량
 ■ 목표배출량
 ■ 총배출량
 - - - 미래배출량
 — 2018 기준



☑ 감축량 : 10,000

☑ 감축률 : 50% ()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부문별 작성방안



적응대책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의거 수립된 해당 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 평가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제시하도록 함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행정재산과 지자체의 지리적 경계내의 공유 자연자원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작성참고를 위한 예시 제시)

국제협력 및
지자체간 협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도시와의 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계획, 지역 소재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 해외진출 지원 전략 등을 제시

교육
소통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학생, 일반인, 기업 임직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부문별 작성방안

녹색성장촉진

탄소중립기본법 제54조(녹색경제 · 녹색산업의 육성 · 지원)를 준용하여
지자체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목표 제시

청정에너지
전환촉진

국가는 석탄발전 감축, 원전·재생e 확충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전환부문의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계획을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의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계층·지역·산업 등을 지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 필요

녹색성장
인력양성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 육성 등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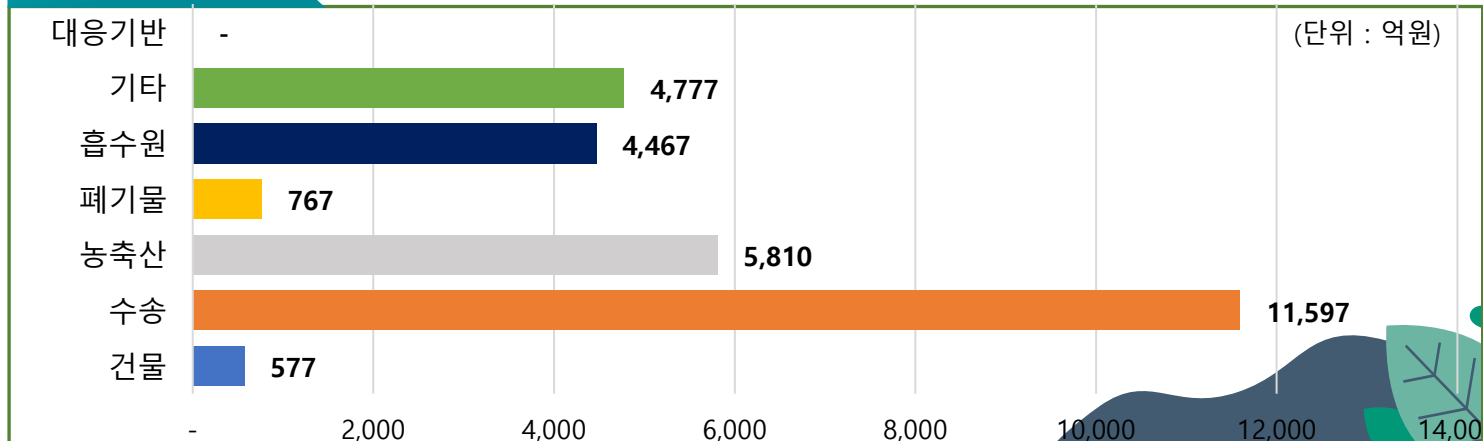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종합 분석(1)

중장기 감축목표

(단위: 천톤CO₂eq)

구 분	18년 배출량	'30년			'33년		
		배출전망	목표배출량	감축률	배출전망	목표배출량	감축률
합 계	15,378	12,745	8,770	43.0%	12,687	8,001	48.0%
건 물	6,555	6,212	3,598	45.1%	6,287	3,128	52.3%
수 송	3,947	3,344	3,104	21.4%	3,145	2,905	26.4%
농축산	3,116	2,870	2,443	21.6%	2,808	2,359	24.3%
폐기물	1,760	1,545	1,231	30.0%	1,552	1,233	30.0%
흡수원	-2,113	-1,225	-1,606	24.0%	-1,106	-1,624	23.1%
추가감축							

재정투자 계획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종합 분석(2)

배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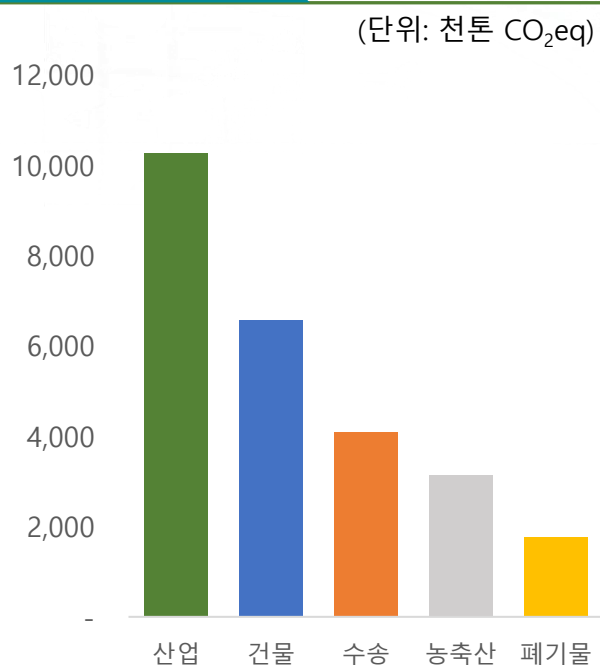
복합형

총 배출량(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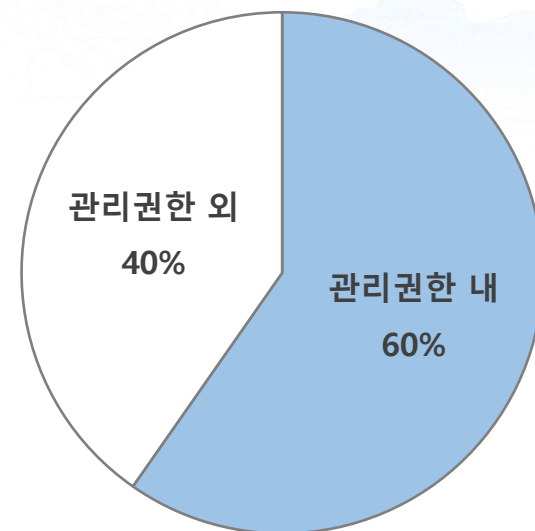
25,756 천톤CO₂eq

구 분	배출량(단위:천톤CO ₂ eq)
합 계	25,756
산 업	10,235
건 물	6,555
수 송	4,086
농축산	3,120
폐기물	1,760

부문별 배출량



관리권한 내,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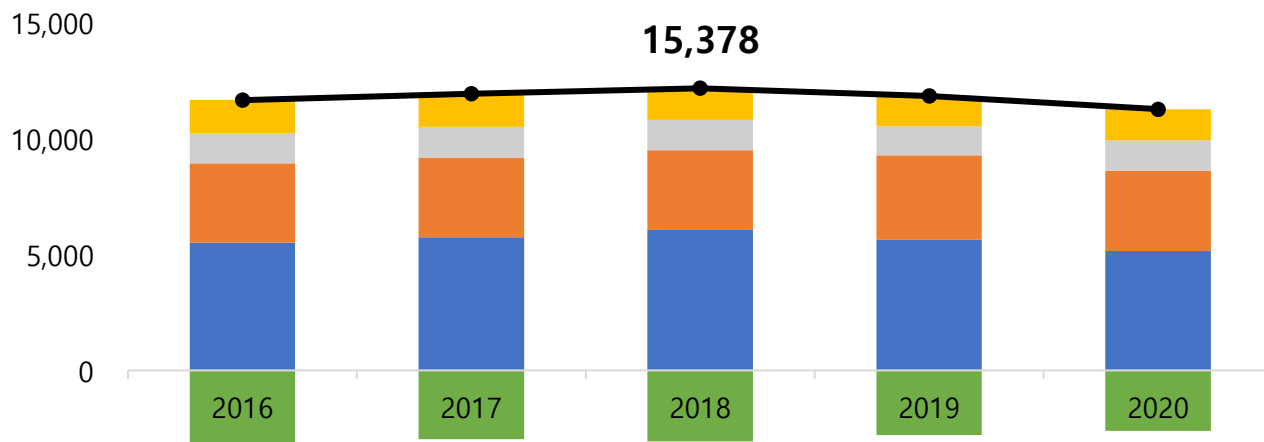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종합 분석(3)

관리권한 배출량(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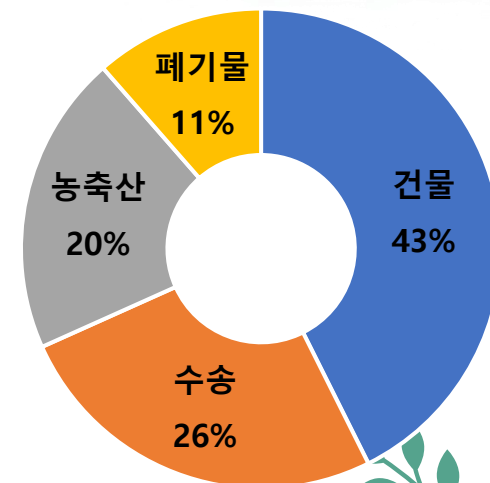
15,378 천톤CO₂eq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6,555	3,947	3,116	1,760	-2,113

연도별 배출량



부문별 비중



(5,000)

관리권한 - 건물

관리권한 - 수송

관리권한 - 농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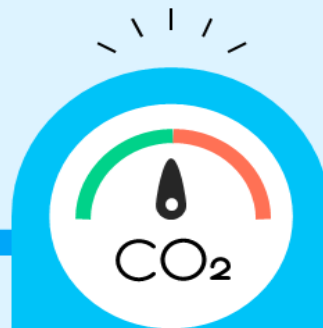
관리권한 - 폐기물

관리권한 - 흡수원

관리권한 - 관리권한 배출량
(흡수원 제외)

IV

주요 FAQ 및 기타



“ Q&A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컨설팅에 나온 주요 질문 ”

Q

2030년 배출량 전망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는지?

A

2018년은 총 배출량 기준(흡수원 제외), 2030년은 순 배출량 기준(흡수원 포함)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 전망시 사용하는 데이터는 관리권한 배출량이어야 함

- 우리나라는 NDC(상향, '21.10) 제출 당시 산림흡수량을 목표달성에 활용기로 결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관계부처 합동, 2021.10.18) 붙임4. 기준연도-목표연도 통계기준 검토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도 목표연도 배출량에 흡수제거량을 활용하도록 명시



“ Q&A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컨설팅에 나온 주요 질문 ”

Q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감축사업은 전환(지자체 관리권한 외) 부문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 부문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대규모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전반에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전환 부문으로 구분, 그 외 건물 옥상 설치, 소규모 그리드 공급 등은 건물 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전망시
“가장 최근에 발표된 GIR통계자료”를 활용하라고
정하고 있음.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시 어떤 통계자료를
써야 하나?

A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관할 시도와의 통계 일치
필요. 관할 시도에서 활용한 통계자료와 동일한
통계자료를 적용해야 함



감축목표 설정 결과(부문별 인벤토리 1,2 비교)

인벤토리 1

〈표 4.1-2〉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결과(부문별-전북 인벤토리1)

부문	기준연도	2030년			2033년		
관리권한 배출량	2018년 배출량 (a)	2030년 전망 배출량	2030년 목표 배출량 (b)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1-(b/a)\} \times 100$	2033년 전망 배출량	2033년 목표 배출량 (c)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1-(c/a)\} \times 100$
전환	506	472	49	90.2	452	47	90.7
산업	8,642	8,066	5,116	40.8	7,738	4,630	46.4
건물	6,555	6,212	3,598	45.1	6,287	3,128	52.3
수송	4,086	3,461	3,221	21.2	3,256	3,016	26.2
농축산	4,153	3,836	3,027	27.1	3,734	2,918	29.7
폐기물	1,760	1,545	1,231	30.0	1,552	1,233	30.0
기타	54	48	48	11.0	48	48	11.0
흡수원	-2,113	-1,225	-1,606	24.0	-1,106	-1,624	23.1
순배출량	23,643	22,415	14,685	43.0	21,960	13,396	48.0
총배출량	25,756	23,640	16,291		23,067	15,020	

인벤토리 2

〈표 4.1-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결과(부문별-전북 인벤토리2)

부문	기준연도	2030년			2033년		
관리권한 배출량	2018년 배출량 (a)	2030년 전망 배출량	2030년 목표 배출량 (b)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1-(b/a)\} \times 100$	2033년 전망 배출량	2033년 목표 배출량 (c)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1-(c/a)\} \times 100$
건물	6,555	6,212	3,598	45.1	6,287	3,128	52.3
수송	3,947	3,344	3,104	21.4	3,145	2,905	26.4
농축산	3,116	2,870	2,443	21.6	2,808	2,359	24.3
폐기물	1,760	1,545	1,231	30.0	1,552	1,233	30.0
흡수원	-2,113	-1,225	-1,606	24.0	-1,106	-1,624	23.1
순배출량	13,265	12,745	8,770	43.0	12,687	8,001	48.0
총배출량	15,378	13,970	10,375		13,793	9,625	

■ 수송 부문 감축량

인벤토리 1 : 865 tCO₂eq, 인벤토리 2 : 843 tCO₂eq

■ 농축산 부문 감축량

인벤토리 1 : 1,126 tCO₂eq, 인벤토리 2 : 673 tCO₂eq



한국환경공단 | 지자체 탄소중립ACT센터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 및 주요 FAQ

감사합니다

Thanks for your listening

